#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81

발의연월일: 2024. 8. 9.

발 의 자:이수진・민병덕・최기상

추미애 • 이기헌 • 김 윤

백승아 • 전종덕 • 서영교

송옥주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하고,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수의 현황 파악과 적정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필 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폭력·성희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는 반면,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 출산휴가

• 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건의료현장에는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 등 임신·출산기능에 대한 위험인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여성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보건의료인력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고,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보호, 출산휴가·육 아휴직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 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보건의료현 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 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함(안 제5조 및 제7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보 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인력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

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법률 제 호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 수준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5호 중 "처우"를 "보수·처우"로 한다.
-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이 임신 또는 출산의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 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에 관한 표준 보호지침을 정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해야한다.
- 제1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

- ·출산·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
	<u>수준에 관한 사항</u>
<u>6.</u> ~ <u>8.</u> (생 략)	<u>7.</u> ~ <u>9.</u> (현행 제6호부터 제8
	호까지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	제7조(실태조사) ①
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	
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u>.</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5
근무여건 및 <u>처우</u> , 이직·퇴	<u>보수·처우</u>
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생 략) ②·③ (생 략) <u><신 설></u>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 경 개선) ①·②(생 략) 경 개선) ①·②(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

- 6.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이 임신 또는 출산의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 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인력등의 모성 보호에 관한 표 준 보호지침을 정하고, 보건의 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 도록 권장해야 한다.

에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출산·육아를 위한후가·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

	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여
	<u>야 한다.</u>
<u>&lt;신 설&gt;</u>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
	항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여야 한
	<u>다.</u>